

규정관리규정

제정 2012. 09. 27.

개정 2018. 06. 27.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사단법인 전북새만금산학융합원(이하“본원”이라 한다)의 규정과 규칙(이하“규정 등”이라 한다)의 제정·개폐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규정”은 정관에서 위임된 제반 사무수행의 기본방침 및 절차에 관하여 정한 것을 말한다.
- 2.“규칙”은 규정시행에 따른 세부사항 및 규정 이외의 본원 운영에 필요한 세부지침을 말한다.

제3조(효력의 순위) ① 규정은 관계법령, 자치법규 또는 정관에 저촉되어서는 아니 된다.

② 규칙은 규정에 저촉되어서는 아니 된다.

③ 동 순위의 규정 중 서로 저촉되는 부분이 있을 때에는 시간적으로 후에 시행된 규정이 우선한다.

제2장 제정 및 개폐

제4조(제정형식) ①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함을 원칙으로 한다.

1. 목 차
2. 목 적
3. 한정적으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
4. 적용범위
5. 각조문의 명칭
6. 시행일자

② 규정을 개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기재사항 이외 다음 각 호의 형식을 갖추어야 한다.

1. 규정의 항목 구분은 장, 절, 조, 항, 호의 순서로 하며 필요에 따라 장, 절을 두지 아니할 수 있다.
2. 조문은 가로쓰기로 하고 숫자는 아라비아 숫자로 한다.
3. 서식 등 별표는 일련번호를 붙여 별도로 작성 첨부한다.
4. 부득이 외래어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 또는 외국어를 병용할 수 있다.

제5조(제정절차 및 입안) ① 규정의 제정·개정 및 폐지는 원장이 발의하고 이사장의 결재를 거쳐 이사회회의 의결로 정하며, 규칙은 업무 소관부서의 장이 입안하여 원장이 정한다.

② 제1항의 입안 시에는 별지 제1호의 서식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규정 등의 제정·개정 및 폐지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1. 규칙 등 명칭
2. 제정·개정 또는 폐지이유
3. 주요골자 (제정 또는 개정시)
4. 제정·개정 또는 폐지안
5. 신·구조문대비표 (부분개정시)
6. 기타 참고사항

제6조(심의 및 조정) ① 소관부서는 입안한 규정을 주관부서에 심의 요청하여야 한다.

② 주관부서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소관부서에서 제출한 규정안에 대하여 다음사항을 검토한다.

1. 법령, 정관 및 다른 규정과의 모순, 저촉 여부
2. 논리적 타당성 및 실효성 여부
3. 규정의 체계 및 형식에의 부합여부
4. 관계부서와의 협의 여부
5. 기타 수정을 요하는 사항유무 등

③ 주관부서는 검토 후 수정안이나 의견을 첨부하여 소관부서의 장에게 송부한다.

④ 소관부서의 장은 제3항의 조정안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관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7조(이사회 제출) 소관부서는 제6조 제3항에 의거 주관부서에서 통보된 규정안을 이사회운영규정에 의한 절차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제8조(승인) 규정의 제정 및 개폐시에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의 승인 등 특별한 절차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규정안이 확정된 후 지체 없이 그 절차를 마쳐야 한다.

제9조(효력발생) 규정은 시행일에 효력이 발생하되 시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것은 공포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제10조(규정 등의 편성) 규정 등은 간단·명료하여야 하며, 규정하는 사항의 내용에 따라 조문형식에 의하여 작성한다.

제11조(소급적용 금지) 규정 등은 원칙적으로 소급 적용하지 못한다. 다만, 그 적용을 받는 자에게 불이익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소급 적용할 수 있다.

부 칙(2012.09.27)

- ①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이전에 행한 업무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18.06.27)

- ①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 목

(주) 제목작성 예시

- 제정의 경우 : ○○○ 규정안
- 전부개정 경우 : ○○○ 규정개정규정안
- 일부개정 경우 : ○○○ 규정중개정규정안
- 폐지의 경우 : ○○○ 규정폐지규정안

1. 제정(개정) 또는 폐지이유

- 포괄적으로 제정 또는 개정하고자 하는 근본취지를 기재한다.

2. 주요골자

- 제정 또는 개정하고자 하는 요지를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가.

나.

-

-

3. 제정·개정 또는 폐지안

4. 신·구조문대비표(부분개정시)

5. 참고사항

가. 제안근거

나. 예산조치

다. 합의

라. 절차

마. 기타 참고사항